

윤리경영위원회 운영규정

애경산업주식회사

제정 : 2022년 05월 17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윤리경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윤리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직무와 권한)

윤리경영위원회는 사내 자문기구로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 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검토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

윤리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, CFO, 각 부문(센터)장, 연구소장, 공장장으로 구성된다.

제5조(위원장)

-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단,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 지정한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한다.
-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CFO, 전무, 상무,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(종류)

- 윤리경영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정기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.
-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윤리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윤리경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(회의성립)

윤리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윤리경영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검토사항)

- ① 윤리경영위원회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윤리경영 관련 주요 정책결정
 2.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평가·및 점검
 3. 윤리규범의 제·개정 및 제도개선
 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윤리경영 실천 및 추진에 관한 사안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
 2. 윤리경영위원회 부의사항 처리결과

제11조(관계인의 출석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2조(의사록)

- ① 윤리경영위원회는 검토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안건, 검토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3조(간사 및 실행기구)

- ① 윤리경영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윤리경영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- ③ 윤리경영위원회는 현장실행의 촉진을 위해 하부조직으로 현장리더를 두며, 각 부문별 지원부서의 장을 현장리더로 정한다.
- ④ 현장리더는 소속부문에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을 진파하고 현장실행을 주도하는 실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2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